

상지대학교 제7대 민주총장 후보자 선정 및 추천에 관한 규정

제정 2018. 11. 6. 대학자치운영협의회 규정 제1호

개정 2018. 11. 7. 대학자치운영협의회 규정 제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지학원 정관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지대학교 제7대 민주총장을 임명함에 있어 상지대학교 구성원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거에 의하여 총장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한 선거관리 및 이사회 추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총장후보자의 선정방법) 상지대학교 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고 한다)의 직접·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정된 총장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한다.

제3조(권리와 의무) 총장후보자의 선정 및 이사회 추천에의 참여와 협력은 구성원의 권리이며 의무이다.

제4조(행정지원) ①총장은 제5조에 의한 상지대학교 제7대 민주총장 후보자 선정 선거관리위원회의 협력요청이 있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총장이 제1항의 협력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총장은 총장후보자 선정 및 추천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직제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본부 처장 중 1명을 선거지원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5조(설치) ①총장후보자의 선정과 추천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으로 상지대학교 제7대 민주총장 후보자 선정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한다.

1. 교수위원 : 교수협의회가 추천하는 일반교원 5명
2. 학생위원 : 총학생회가 추천하는 재학 중인 학생 5명
3. 직원위원 : 전국대학노동조합상지대지부(이하 “직원노조”라고 한다)가 추천하는 직원 3명

②제1항의 추천 단체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때에는 그 단체 회원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자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규정에 따라 선정된 총장후보자를 이사회가 총장으로 임명한 날에 해산한다.

제6조(직무)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한다.

1. 총장후보자가 되기 위하여 입후보하는 사람(이하 “입후보자”라고 한다)의 등록 및 자격심사에 관한 사무
2. 총장후보자 선정을 위한 투표·개표 등 선거의 관리에 관한 사무
3. 입후보자 등록 및 선거, 총장후보자의 선정 등의 절차에서 규정 위반 및 부정 사례의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무
4. 공개합동정책토론회에 관한 사무
5. 총장후보자의 이사회 추천에 관한 사무
6. 그 밖에 총장후보자 선정 및 추천과 관련한 사무

제7조(위원의 공정의무 등) ①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며, 총장후보자의 선정 및 추천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공정성을 기하여야 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총장후보자 선정과 추천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수행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입후보자 등록 신청을 하거나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추천인이 될 수 없으며, 입후보자가 총장후보자로 선정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이하 “선거운동”이라고 한다)를 할 수 없다.

④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공정하지 않게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주의·경고, 시정 및 사임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조치를 받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조직) ①선거관리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선거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선거관리위원회에는 총장후보자 선정 및 추천에 관한 업무,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⑥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을 두며, 사무국의 구성·직무 등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9조(회의) ①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회의소집을 거

부할 때에는 회의소집을 요구한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진행 사항을 회의록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결정족수)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제23조의 입후보자의 자격심사
2. 제25조 제3항의 입후보자 등록의 취소
3. 제35조 제1항의 입후보자 등록의 취소 및 선거인의 자격박탈
4. 제47조 제3항의 총장후보자 선정의 취소

제3장 선거인 및 선거인명부

제11조(선거일 등의 공고) ①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을 정하고, 선거일 25일 전에 선거일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에 투표 일시·장소·방법·투표용지모형 등 투표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선거인) ①선거인은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교원선거인 : 일반전임교원. 휴직이나 정직, 6개월 이상 국내외장기파견 또는 해외연구년 중인 교원은 제외한다.
2. 학생선거인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등록을 필한 학부 및 일반대학원생. 휴학생 및 계약학과 학생은 제외하며, 6개월 이상 국내외장기연수 중인 학생(교환학생을 포함한다) 등의 경우 총학생회의 의견을 들어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학생에게는 선거권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직원선거인: 정규직원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직원. 기간제계약직원, 휴직, 정직, 공로연수 중인 직원은 제외하며, 산학협력단 및 상지대학교부속한방병원 소속 직원의 선거권에 관해서는 직원노조의 의견을 들어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② 각 선거인의 선거참여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선거인 : 70%
2. 직원선거인 : 8%
3. 학생선거인 : 22%

제13조(선거인명부의 작성) ①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로부터 20일 전(이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이라 한다)부터 선거일 15일 전까지 선거인별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작성을 위하여 총장에게 선거인과 관련한 인적 사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총장은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선거인명부에는 선거인의 성명·성별·소속 및 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누구든지 둘 이상의 선거인명부에 오를 수 없다.

제14조(선거인명부의 열람·정정) ①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작성을 완료한 때에는 4일간 장소를 정하여 선거인에게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선거인은 누구든지 제1항의 열람기간 안에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신청이 있는 다음날까지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선거인명부의 확정·교부) ①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에 선거인명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제24조 제1항의 입후보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선거인명부의 사본이나 전산자료복사본을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장 입후보자의 등록

제16조(입후보자의 자격) ①입후보자는 상지대학교의 이념과 민주화투쟁의 가치실현에 투철한 사람으로서 대학의 자치를 존중하며, 학문과 교육의 양식을 가지고 상지대학교를 발전시킬 수 있는 대학운영능력을 갖춘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입후보자 등록신청일 현재 상지대학교에 10년 이상 재직 중인 일반전임교원이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후보자가 될 수 없다.

1.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사립학교법」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서 정하는 연구부정행위로 형의 선고를 받았거나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

제17조(입후보자의 제한) ①누구든지 입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입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입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입후보자등록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그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1. 교무위원
2. 부처장 및 대학원 부원장, 인재개발원장, 상지대학교부속한방병원장
3. 법인사무국장
4. 교수협의회 공동대표

제18조(입후보자 등록신청의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로부터 25일 전에 입후보자 등록공고를 하여야 하며,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제19조(입후보자의 등록신청) ①입후보자는 「입후보자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A4 용지 2장 이내의 입후보자 소개서(학력, 경력, 상벌사항 등 포함)
2. 제20조에서 규정하는 추천서
3. A4 용지 5장 이내의 상지대학교의 발전 및 운영에 관한 계획서
4. 서약서(소정양식)
5. 최근 5년간 연구업적목록
6.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7. 재직증명서
8. 범죄경력조회서(수사 중인 사건 포함)
9. 보직사임확인서

②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출된 서류를 확인하고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입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제22조에 따른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선거인의 입후보자 추천) ①입후보자는 선거인 70명 이상의 기명추천을 받아야 한다. 단과대학별 추천인은 10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②선거인은 1명의 입후보자만을 추천할 수 있으며, 2명 이상의 입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추천인의 추천 모두를 무효로 한다.

제21조(보완요구) ①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조의 입후보자 등록신청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가 제1항의 보완기간 안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혀 접수된 입후보자 등록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반려하여야 한다.

제22조(기탁금) ①입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 시에 일금 5백만 원의 기탁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24조 제2항의 사퇴한 입후보자, 제25조 제3항(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입후보자 및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장후보자 선정이 취소된 입후보자가 납부한 기탁금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기탁금을 총장후보자 선정 및 추천을 위한 경비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이는 상지대학교 발전기금에 귀속된다.

제23조(자격심사) ①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등록신청 마감일로부터 2일 이내에 제16조에 따른 입후보자 자격의 적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부적격자로 결정된 사람은 입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자격심사를 위하여 입후보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의견청취를 할 수 있다.

③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 등록신청을 한 사람이 입후보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결정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입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 ①선거관리위원회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입후보자의 적격심사를 한 후 등록된 입후보자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등록된 입후보자가 선거일 전에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③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된 입후보자가 제출한 제19조의 서류를 선거인에게 공개할 수 있다.

제25조(연구윤리의 검증) ①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의 연구업적 중 최근 5년 이내의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관한 검증을 연구윤리위원회에 지체 없이 의뢰하여야 한다.

②의뢰를 받은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의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증결과를 선거관리위원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③선거관리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회의 회신 내용을 공지하고, 입후보자의 연구부정행위 등 연구윤리에 문제가 있어 총장으로서의 자질과 품위를 갖추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후보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④선거관리위원회가 제3항의 입후보자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유와 함께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⑤제27조의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인 등으로부터 입후보자의 연구윤리 검증에 관한 추가 요청이 있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

제26조(자격심사 및 연구윤리의 검증에 관한 특례)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3조의 자격심사 및 제24조의 연구윤리의 검증에 있어 상지대학교 민주화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 및 상벌과 연구부정행위의 판정에 관해서는 그 사유를 정당하게 참작하여야 한다.

제5장 선거운동

제27조(선거운동기간) ①선거운동기간은 제24조제1항의 등록된 입후보자를 공고한 때 부터 선거일 전일 22:00까지로 한다.

②다음 각 호의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

1. 제21조의 추천인 모집 등 입후보를 위한 준비행위
2.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제28조(선거운동의 제한) ①선거인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교내외의 직무와 지위를 불문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인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다음 각 호의 사람은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인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거나 그 밖에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선거인이 아닌 사람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제17조 제2항에 열거된 사람

제29조(금지행위) 누구든지 입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 그 밖에 선거결과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전·물품·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 또는 직위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2. 금전·물품·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 또는 직위를 제공받거나 제공받을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3. 금전·물품·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 또는 직위 제공을 요구 내지 알선하는 행위
4. 입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강요 또는 설득하거나, 제1호 내지 제3호에 정한 행위
5. 연설·벽보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입후보자에 대한 거짓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6.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입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집단적 서명, 시위, 여론조사 및 모의투표
8. 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을 받지 않은 벽보·현수막 등 선거홍보물을 배부·게시·우편발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등 공개하는 행위
9.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동문회·향우회·동호회 등 집회

- 10.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한 입후보자 초청 토론회·간담회·강연회 등 집회
- 11.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하거나 확인한 벽보 등을 훼손하는 행위
- 12. 공개합동정책토론회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하는 행위
- 13.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한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14. 그 밖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한 선거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30조(선거홍보물의 제한) ①선거운동을 위하여 벽보, 현수막, 선거공약 등이 게재된 인쇄물 등의 선거홍보물을 배부·게시·우편발송·전송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작성내용·수량·게시 등의 방법 등을 신고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누구든지 제1항의 신고·확인을 받지 아니한 선거홍보물을 배부·게시·우편발송·전송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집회 등의 제한) ①동문회·향우회·동호회 등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집회를 할 수 없다.

②입후보자 초청 토론회·간담회·강연회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대표자는 교내에서만 이를 개최할 수 있으며,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2조(공개합동정책토론회) ①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기간 중 공개합동정책토론회를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입후보자는 고의로 공개합동정책토론회의 참석을 거부할 수 없으며, 그 일정 등의 협의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선거관리위원회는 공개합동정책토론회의 일시, 장소, 주제, 진행방식 등을 사전에 입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누구든지 공개합동정책토론회에서 입후보자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후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선거관리위원회는 공개합동정책토론회의 진행 상황과 내용을 영상으로 촬영하여 공개한다.

⑥그 밖에 공개합동정책토론회에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여 공고한다.

제33조(선거운동의 감독) ①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이 공정선거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의 예방 또는 중지를 위하여 입후보자 또는 선거인에게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입후보자 또는 선거인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34조(금지행위 등의 신고) 누구든지 입후보자 또는 선거인이 이 규정에서 정하는 금지행위 또는 제한행위 등의 부정선거운동을 하거나 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

사진, 녹화영상 등의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제35조(금지행위 등에 대한 제재) ①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장에서 정하는 금지행위 또는 제한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경미한 위반행위의 경우 : 1회 위반 시 경고, 2회 위반 시 시정명령, 3회 위반 시 입후보자의 등록취소 또는 선거인의 자격박탈
2. 위반행위가 중대하여 공정한 선거를 현저히 해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1회 위반 시 입후보자의 등록취소 또는 선거인의 자격박탈

②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와 제재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6장 투표와 개표

제36조(선거방법) 선거는 선거인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하며, 1명의 입후보자에게만 기표한다.

제37조(투표의 제한) ①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사람은 투표할 수 없다.

②선거인은 주민등록증·학생증(주민등록증·학생증이 없는 경우에는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를 받아야 한다.

③제2항의 신분증명서를 지참하지 않아 본인 확인을 할 수 없는 선거인은 투표를 할 수 없다.

제38조(투표참여의 권유) 선거인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입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투표소의 출입제한) 투표하려는 선거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투표관리관, 투표참관인 및 투표진행사무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제40조(투표함의 봉인·송부) ①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투표함마다 투표관리관 1명을 둔다.

②투표관리관은 투표시각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투표소의 문을 닫아야 하며, 투표소 안에 있는 선거인의 투표가 끝나면 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투표함의 투입구와 그 자물쇠를 봉쇄·봉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는 투표참관인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투표관리관은 투표가 끝난 후 지체 없이 투표함 및 그 열쇠와 선거인명부 및 잔여 투표용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1조(개표의 개시) ①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율이 각 선거인별 투표자 수에 해당 선거인별 투표 값을 곱하여 합산한 비율이 50% 이상인 때에 한하여 개표를 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의한 투표율이 50% 미만인 때에는 당해 선거의 무효를 선언·공고하고, 이를 입후보자에게 통지한다.

제42조(투표함의 개함)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표를 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개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투표함의 봉쇄와 봉인을 검사한 후 이를 열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는 개표참관인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43조(무효투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칸에도 투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두 칸에 걸쳐서 표를 하거나 두 칸 이상의 칸에 표를 한 것
4. 어느 칸에 표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기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6.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제44조(투·개표참관인) ①입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수의 투·개표참관인을 투표일 및 개표일 2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투·개표참관인은 투·개표 과정의 공정성을 감시한다.

제45조(개표관람) 선거인은 누구든지 개표상황을 관람할 수 있다.

제7장 총장후보자의 선정 및 추천

제46조(총장후보자의 선정) ①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결과 유효투표의 최대다수를 얻은 입후보자를 총장후보자로 선정하여 공고한다.

②입후보자가 득표한 득표수는 각 선거인별 유효득표수에 해당 선거인별 1인당 투표값을 곱한 값의 총합으로 한다.

제47조(이의신청 및 선정취소) ①선거결과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 및 입후보자는 제46조 제1항의 총장후보자 선정 공고일로부터 2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서로서 그 사유를 적시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의 심사 결과 입후보자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총장후보자로 선정되었거나 투표와 개표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공정선거를 현저하게 해하여 선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총장후보자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총장후보자의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다음 순위의 득표자가 총장후보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48조(총장후보자의 추천) ①선거관리위원회는 제47조의 이의신청 절차가 모두 종료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총장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고 이를 공고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선거결과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8장 보 칙

제49조(등록된 입후보자가 1명인 경우의 특례) ①제24조에 규정에 의해 등록된 입후보자가 1명인 때에는 찬성·반대의 신임투표에 의하여 유효투표수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총장후보자를 선정하여 이사회에 추천한다.

②제1항의 신임투표에는 제27조 내지 제48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50조(총장임명 후 사임에 관한 확약) 제19조 제1항 제4호의 서약서에는 입후보자가 총장으로 임명된 이후에 현저한 선거운동부정이나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거나 제16조의 입후보자의 자격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총장의 직에서 스스로 사임할 것임을 확약하는 내용의 서약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1조(적용범위 등) ① 이 규정은 상지대학교 제7대 민주총장 후보자의 선정 및 추천에 한하여 적용된다.

②이 규정은 대학자치운영협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개정한다.

제52조(시행규정) 이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따로 규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2호, 2018. 11. 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상지대학교 제6대 민주총장 후보자”는 “상지대학교 제7대 민주총장 후보자”로 본다.